

# 2022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가. 기관별 선발 예정인원

시험명	직 급	직 렌	직 류	선발예정	임용예정기관(인원)
합 계			43개	1,305명	
제 2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 계		27개	1,188명	
	8급	보건진료	보건진료	13	천안시 2, 아산시 1, 논산시 2, 금산군 1, 부여군 2, 서천군 2, 예산군 2, 태안군 1
	9급	행정	일반행정 (일반)	496	충청남도 50, 천안시 62, 공주시 16, 보령시 45, 아산시 41, 서산시 40, 논산시 22, 계룡시 5, 당진시 36, 금산군 12, 부여군 38, 서천군 31, 청양군 25, 홍성군 26, 예산군 20, 태안군 14
					충청남도의회 2, 천안시의회 2, 아산시의회 1, 서산시의회 2, 계룡시의회 2, 당진시의회 1, 부여군의회 1, 서천군의회 2
			일반행정 (장애인)	49	충청남도 5, 천안시 7, 공주시 3, 보령시 3, 아산시 5, 서산시 5, 계룡시 1, 당진시 3, 금산군 3, 부여군 1, 서천군 5, 청양군 2, 홍성군 3, 예산군 1, 태안군 2
			일반행정 (저소득층)	27	충청남도 3, 천안시 3, 공주시 3, 보령시 2, 아산시 2, 서산시 5, 논산시 1, 당진시 1, 금산군 1, 부여군 1, 서천군 1, 청양군 1, 홍성군 1, 예산군 1, 태안군 1
		세무	지방세 (일반)	27	천안시 7, 공주시 1, 아산시 1, 서산시 3, 계룡시 1, 당진시 1, 금산군 2, 서천군 3, 청양군 4, 홍성군 2, 예산군 2
			지방세 (장애인)	3	천안시 1, 당진시 1, 부여군 1
	지방세 (저소득층)		1	예산군 1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임용예정기관(인원)
제 2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전산	전산 (일반)	14	충청남도 4, 천안시 3, 공주시 2, 보령시 1, 당진시 1, 금산군 1, 서천군 1, 태안군 1
			전산 (장애인)	2	공주시 1, 당진시 1
			데이터 (일반)	8	충청남도 2, 천안시 1, 계룡시 1, 당진시 2, 부여군 1, 예산군 1
			데이터 (장애인)	1	당진시 1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반)	62	천안시 8, 공주시 11, 보령시 3, 아산시 14, 서산시 5, 계룡시 2, 당진시 3, 금산군 4, 부여군 1, 서천군 2, 청양군 3, 홍성군 2, 예산군 2, 태안군 2
			사회복지 (장애인)	14	천안시 2, 공주시 1, 보령시 1, 서산시 1, 계룡시 1, 당진시 2, 금산군 3, 홍성군 2, 예산군 1
			사회복지 (저소득층)	6	천안시 1, 보령시 1, 서산시 1, 계룡시 1, 당진시 1, 청양군 1
		사서	사서 (일반)	16	천안시 3, 공주시 2, 아산시 6, 서산시 3, 당진시 1, 부여군 1
			사서 (장애인)	2	논산시 1, 당진시 1
		공업	일반기계	26	천안시 5, 공주시 7, 보령시 1, 아산시 4, 서산시 1, 논산시 1, 당진시 3, 금산군 2, 서천군 1, 태안군 1
			일반전기	11	충청남도 3, 공주시 2, 보령시 1, 서산시 1, 당진시 4
			일반화공	10	충청남도 2, 천안시 1, 공주시 1, 보령시 4, 당진시 1, 홍성군 1
		농업	일반농업 (일반)	40	충청남도 3, 천안시 7, 보령시 3, 아산시 3, 서산시 5, 당진시 3, 금산군 2, 부여군 6, 청양군 4, 홍성군 1, 예산군 3
			일반농업 (저소득층)	1	부여군 1
			축산	23	충청남도 5, 천안시 3, 공주시 2, 아산시 1, 서산시 3, 당진시 3, 금산군 1, 서천군 1, 홍성군 2, 예산군 2
		녹지	산림자원	25	충청남도 2, 천안시 6, 공주시 2, 보령시 3, 당진시 3, 금산군 3, 서천군 1, 청양군 5
			조경	7	천안시 2, 아산시 2, 서산시 2, 홍성군 1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임용예정기관(인원)
제 2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해양수산	일반수산	7	충청남도 2, 서산시 2, 당진시 1, 금산군 1, 태안군 1
			선박항해	2	서산시 1, 태안군 1
			선박기관	6	충청남도 5, 태안군 1
		보건	보건 (일반)	42	천안시 4, 공주시 8, 아산시 4, 서산시 5, 계룡시 2, 당진시 2, 금산군 2, 부여군 2, 서천군 2, 청양군 4, 홍성군 5, 예산군 2
			보건 (장애인)	4	논산시 1, 당진시 1, 부여군 1, 홍성군 1
		환경	일반환경	39	천안시 6, 공주시 2, 보령시 2, 아산시 3, 서산시 5, 논산시 2, 당진시 4, 부여군 3, 서천군 3, 청양군 4, 홍성군 2, 예산군 3
		시설	일반토목 (일반)	91	충청남도 15, 천안시 15, 공주시 4, 보령시 5, 아산시 5, 서산시 6, 계룡시 2, 당진시 5, 금산군 2, 부여군 4, 서천군 4, 청양군 4, 홍성군 1, 예산군 15, 태안군 4
			일반토목 (저소득층)	1	당진시 1
			건축 (일반)	62	충청남도 4, 천안시 13, 공주시 2, 보령시 5, 아산시 5, 서산시 8, 계룡시 2, 당진시 5, 금산군 2, 부여군 4, 서천군 2, 청양군 3, 홍성군 2, 예산군 1, 태안군 4
			건축 (장애인)	2	당진시 1, 예산군 1
			지적	18	충청남도 3, 공주시 1, 아산시 2, 서산시 2, 논산시 2, 금산군 3, 부여군 2, 서천군 1, 청양군 2
			디자인	1	당진시 1
			도시계획	3	천안시 1, 공주시 1, 아산시 1
			방재안전	방재안전	10
		방송통신	통신기술	10	천안시 3, 공주시 1, 보령시 1, 아산시 1, 서산시 1, 금산군 1, 부여군 1, 예산군 1
		식품위생	식품위생	6	보령시 1, 아산시 1, 서산시 3, 논산시 1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임용예정기관(인원)
제 2 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소 계		2개	42명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	4	천안시 1, 서산시 2, 계룡시 1
			의료기술 (방사선)	5	천안시 2, 아산시 1, 금산군 1, 태안군 1
			의료기술 (물리치료)	1	서천군 1
			의료기술 (치위생)	5	천안시 2, 아산시 1, 서산시 1, 서천군 1
	운전	운전	27	충청남도 2, 천안시 5, 공주시 6, 아산시 4, 서산시 2, 논산시 2, 서천군 1, 태안군 3 아산시의회 1, 서천군의회 1	
제 3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 계		1개	6명	
7급	행정	일반행정	6	충청남도 6	
제 3 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소 계		6개	39명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3	보령시 1, 부여군 1, 예산군 1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18	천안시 7, 공주시 1, 보령시 1, 아산시 1, 서산시 1, 논산시 1, 금산군 1, 부여군 2, 서천군 1, 청양군 2
			원예	6	서산시 2, 논산시 1, 홍성군 1, 예산군 2
	9급	공업 시설	일반전기	2	아산시 1, 홍성군 1
			일반토목	5	보령시 2, 아산시 2, 홍성군 1
건축			5	보령시 2, 아산시 2, 부여군 1	
제 4 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계고]	소 계		7개	30명	
	9급	공업	일반기계	1	천안시 1
			일반전기	2	서산시 1, 논산시 1
		농업	일반농업	2	서산시 1, 청양군 1
		해양수산	일반수산	2	보령시 2
			선박항해	1	보령시 1
		시설	일반토목	12	천안시 2, 공주시 2, 보령시 1, 아산시 3, 서산시 1, 논산시 1, 부여군 1, 청양군 1
			건축	10	천안시 2, 공주시 1, 보령시 1, 아산시 3, 논산시 1, 태안군 2

※ 임용예정기관은 응시 자격요건에 따라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해당 임용예정기관으로 임용됩니다.

나. 직류별 시험과목

구분	직급	직렬	직류	과목수	시험 과목
제 2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급	보건진료	보건진료	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
	9급	행정	일반행정	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세무	지방세	5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전산	전산	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데이터	5	국어, 영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사회복지	사회복지	5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서	사서	5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업	일반기계	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	일반농업	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산	5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	산림자원	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조경	5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해양수산	일반수산	5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선박항해	5	국어, 영어, 한국사, 항해, 선박운용
			선박기관	5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보조기계
		보건	보건	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경	일반환경	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	일반토목	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		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디자인		5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도시계획		5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방재안전	방재안전	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구분	직급	직렬	직류	과목수	시험 과목
제 2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방송통신	통신기술	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식품위생	식품위생	5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제 2 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운전	운전	2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제 3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행정	일반행정	5	필수(4):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제 3 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3	문화사, 한국문화사, 한국고고학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3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원예	3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9급	공업	일반전기	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	일반토목	3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	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제 4 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계고 출업(예정)자]	9급	공업	일반기계	3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일반전기	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업	일반농업	3	생물, 재배, 농업생산환경	
	해양수산	일반수산	3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선박항해	3	물리, 선박일반, 항해	
	시설	일반토목	3	물리, 토목일반, 측량	
		건축	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선택과목 및 조정(표준)점수 제도 폐지**
-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7급 행정) 영어 및 한국사 과목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붙임6 참조)
-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출제범위 및 과목 안내
  - 물 리 : 물리학 I / - 생 물 : 생명과학 I
  - 측 량 : 2015 교육과정상 실무과목이나 이론으로 출제
  - 2015년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기계설계' 과목은 '기계제도', '식용작물'은 '재배', '응용역학개론'은 '토목일반'으로 변경

##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 가. 시험 방법

- ①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 ② 서류전형 : 응시자격 등 기준 적합 여부 서면심사
- ③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 제출서류로 자격요건을 조회하며, 결과에 따라 제3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나. 시험 시간

시 험 명	직급 및 직렬	과 목 수	시 험 시 간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5과목	10:00 ~ 11:40 (100분)
	8급 · 9급	5과목	10:00 ~ 11:40 (100분)
경력경쟁임용시험	연구사, 지도사	3과목	10:00 ~ 11:00 (60분)
	9급	3과목	10:00 ~ 11:00 (60분)
	9급(운전)	2과목	10:00 ~ 10:40 (40분)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에 따라 장애유형별 시험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붙임1' (장애인 응시생 등 편의지원 제공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시험문제의 출제

### 가. 도(道) 자체출제 : 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을 제외한 과목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전 과목
- 제3·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을 제외한 과목

### 나.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문제 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미회수)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자체출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전 과목
- 제3·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자체출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시 험 명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8·9급)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정부회계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공중보건, 보건행정,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조경학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국어(한문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일반전기, 건축)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건축계획, 건축구조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기술계고)	물리, 토목일반, 측량, 기계일반, 기계제도, 전기이론, 전기기기, 건축계획, 건축구조, 생물, 재배

## 4. 응 시 자 격

###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추가면접을 실시할 경우에도 당해 시험의 최초 면접시험 최종일로 합니다)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2022. 1. 4.> / 바. 삭제 <2022. 1. 4.>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나. 거주지 제한

### 1) 충청남도, 시군 및 지방의회 응시자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2) 거주지 제한 모집 시군 및 지방의회 응시자

직급·직렬	임용예정기관	거주지 제한
9급 행정 (일반행정) [장애인 자소특채 제외]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및 해당 시군 의회	<p>▶ 아래의 <b>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li> <li>2)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li> </ol>
9급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시군	<p>▶ 아래의 <b>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충청남도 내 소재한 기술계고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li> <li>2) 타지역 소재 기술계고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충청남도 거주지 제한 요건 충족자</li> </ol>

-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이면 충족합니다.
- ※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한 행정구역 기준을 착오하여 불합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과거 충청남도 행정구역이었던 공주시 일부 지역 및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경력으로 충청남도에 응시하는 경우 거주지 조건 미충족으로 불합격처리 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 연령**

직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비 고
7급, 연구사, 지도사	20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8급, 9급	18세 이상	2004. 12. 31 이전 출생자	

※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입학한 17세(2005.12.31. 이전 출생자) 해당자도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5)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붙임 1" 『장애인 등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를 참조하여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자체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편의지원 내용이 일부(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 제한됩니다.

**< 장애인, 임신부 등 응시생 편의지원 신청 구비서류 제출기간 >**

- ▶ 제2회 공임 및 제2회 경임 : 2022. 03. 21.(월) ~ 03. 28.(월)
- ▶ 제3회 공임 및 제3·4회 경임 : 2022. 07. 18.(월) ~ 07. 25.(월)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 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함)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 또는 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4) 저소득층 구분모집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구분모집 유의사항**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접수하여 응시한 경우 불합격처리 되오니, 구분모집 요건 해당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 자격요건 : 자격증·면허증·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제한내용	
<b>제 2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b>	8급	보건진료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9급	전산	전산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데이터	▶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복지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서	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해양수산	선박항해	▶ 기술사: 조선 ▶ 기사: 조선, 항로표지 ▶ 산업기사: 조선, 항로표지 ▶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 기술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 기사: 일반기계 ▶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 기관사1급 내지 6급	
		시설	지적	지적	▶ 기술사: 지적 / ▶ 기사: 지적 / ▶ 산업기사: 지적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제한내용
제 2 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의료기술 (방사선)	▶ 방사선사
			의료기술 (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의료기술 (치위생)	▶ 치과위생사
		운전	운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승합·대형화물·대형특수자동차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운전직렬 자격요건 참조
제 3 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 역사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보존과학을 전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원예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9급	공업	일반전기	▶ 전기기사
	9급	시설	일반토목	▶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필요(학위취득 과정은 경력 불인정)
	9급	시설	건축	▶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필요(학위취득 과정은 경력 불인정)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제한내용
제 4 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계고)	9급	공업	일반기계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과 관련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를 졸업하고(졸업예정자 포함)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일반전기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와 관련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를 졸업하고(졸업예정자 포함)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	일반농업	▶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와 관련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를 졸업하고(졸업예정자 포함)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해양수산	일반수산	▶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와 관련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를 졸업하고(졸업예정자 포함)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선박항해	▶ 항해(학)와 관련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를 졸업하고(졸업예정자 포함)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설	일반토목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과 관련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를 졸업하고(졸업예정자 포함)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건축	▶ 건축(건축설비)와 관련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를 졸업하고(졸업예정자 포함)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1)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 자격증(면허증)을 보유한 사람 및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예정인 사람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하고,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2) 응시 자격요건을 자격증으로 제한하는 경우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3) 위 표에서 “**전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대학교에서 비전공한 사람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 4) 위 표에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관련 계통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해당 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5)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6) 위 3), 4)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서류전형일까지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천서 서식 및 작성 유의사항은 “붙임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명칭이 동일한 경우에도 관련 계통 또는 동일 계통 확인을 위하여 학교장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7)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시설(일반토목, 건축) 응시자격 요건 중 ‘기능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 ※ 학위 취득과정은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8) 운전직렬 응시 자격요건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 후 대형승합·대형화물·대형특수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 대형승합·대형화물·대형특수자동차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준에 따름
- ※ 자동차등록증 상의 차종에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라고 기재된 차만 해당
- ※ 운전직 면접 시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검증을 위하여 면접시험 과정에 45인승 대형버스 운행 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며, 장소 및 일정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운전직렬 제출서류 >

-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 대형승합·대형화물·대형특수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 1부(사업자등록업체 발행한 1년 이상 운전경력)
  - 운전경력증명서는 “붙임5” 서식으로 제출해야하며 사업체에서 발행한 자체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붙임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발급(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이 포함되도록 발급)
- ※ 경력확인이 불명확한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9)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응시 자격요건

-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충청남도 내 소재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를 졸업한 사람(2023년 2월 졸업 예정인 사람 포함) 또는 충청남도 외 타지역 소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를 졸업한 사람(2023년 2월 졸업예정인 사람 포함) 중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각급 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포함)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추천서 접수기간 마감일 현재 각급 대학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 또는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 (2005. 12. 31. 이전 출생자)로 제한됩니다.

※ 응시자의 대학 재학 또는 대학 졸업이 확인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 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직류별 해당학과 여부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은 2022. 6. 22.(수) ~ 6. 24.(금)이며**, 기간 내 학교에서 일괄 제출해야 합니다.(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해당 대학에 재학 및 졸업한 사실이 없음(중퇴)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후 추천) 기타 성적, 추천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4"[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추천 시 유의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취소시간 : 09:00~24:00)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접수 : 3. 21.(월) ~ 3. 25.(금) *취소 : 3. 21.(월) ~ 3. 28.(월)	필 기	5. 18.(수)	6. 18.(토)	7. 15.(금)
		면 접	7. 15.(금)	8. 1.(월) ~ 8. 10.(수)	8. 22.(월)
장애인, 임신부 등 응시생 편의지원 신청 구비서류(붙임1) 제출기간 < 2022. 3. 21.(월) ~ 3. 28.(월) [ 3. 28.(월)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인정 ] >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3·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접수 : 7. 18.(월) ~ 7. 22.(금) *취소 : 7. 18.(월) ~ 7. 25.(월)	필 기	9. 29.(목)	10. 29.(토)	11. 22.(화)
		면 접	11. 22.(화)	12. 5.(월) ~12. 8.(목)	12. 20.(화)
장애인, 임신부 등 응시생 편의지원 신청 구비서류(붙임1) 제출기간 < 2022. 7. 18.(월) ~ 7. 25.(월) [ 7. 25.(월)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인정 ] >					

※ 상기 일정은 시험 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go.kr)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접수시간 : **접수 시작일 09:00 부터 접수 마감일 18:00 종료(기간 중 24시 접수)**

###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1) 8·9급 : 5,000원, 7급 및 연구·지도사 : 7,000원  
※ 이외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 수수료) 소요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다. 응시원서 사진

- 1) 사진파일 규격 : 파일형식 JPG, 크기 3.5cm×4.5cm, 해상도 100DPI 이상
- 2)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 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을 보유한 사진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道, 시군, 지방의회)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복수)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전국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직렬을 변경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 3)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도, 시군, 지방의회)별로 경쟁하여 선발됩니다.
- 4)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사람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5)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 6)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 해당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반드시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붙임 2” 참조)는 가산자격증 입력 기간에 반드시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7)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붙임 1” 참조)

- 8)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9)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10)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7급 행정) 응시자는 선택과목을 신중히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1)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내**에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응시원서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응시포기로 간주 처리함)

※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학교에서 일괄 제출) : 2022. 6. 22.(수) ~ 6. 24.(금)**

- 12)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로 문의바랍니다.

## 7.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18.5.12. 전 시험)	TEPS (‘18.5.12. 이후 시험)	G-TELP	FLEX
	PBT	IBT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530	71	700	625	340	65 (level 2)	625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청각장애)	352	-	350	375	204	-	375

※ 청각장애의 정도가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양쪽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영어능력검정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1) 2017.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 2017.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3)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성적 제출방법

- 1) 응시자는 사전등록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접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2)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추가등록해야 합니다. [추가등록 기간 : 2022. 10. 24.(월) ~ 10. 28.(금)]

## 8. 한국사능력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가. 기준점수(등급)

-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1)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성적 제출방법

- 1)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2)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추가등록해야 합니다. [추가등록 기간 : 2022. 10. 24.(월) ~ 10. 28.(금)]

## 9. 가 산 특 전

###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 참고
의사상자 등 (6급 이하 적용)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취득하고, 가산특전 등록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등록한 경우에 한합니다.

### 나. 가산특전 등록기간

시험명	등록기간	등록시간	등록사항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2022. 6. 18.(토) 09:00 ~ 2022. 6. 21.(화) 24:00	기간 내 24시간 접수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증서) 번호 등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3.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2022. 10. 29.(토) 09:00 ~ 2022. 11. 1.(화) 24:00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며, 가산특전 등록기간에 등록한 경우에 한함)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점 비율을 가산합니다.
- 2) 가산점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4) 취업지원대상자가 "라"항의 의사상자 가산점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라.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며, 가산특전 등록기간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의상자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점 비율을 가산합니다.
- 2) 가산점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4)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다”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 해당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마.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며, 가산특전 등록기간에 등록된 자격증에 한함)**

**1) 직렬별 적용 가산점**

가) 행정직군, 보건(보건) 직렬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비율	직렬(직류)	행정직(일반행정)	세무직(지방세)	사회복지직	보건직(보건)
5%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1·2급

나)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붙임 2” 가산대상 자격·면허증 일람표 참조)

구 분	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단, 해당분야 자격·면허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은 가산점 미적용

## 2)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직렬별적용 가산점은 각각 가산하여 합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의 경우 가산특전 등록기간에 가산점 비율, 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 등을 본인이 확인하여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나)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산특전 입력기간 중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 없음)

다)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번호(보훈번호) 등 자격증에 관한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임용예정기관별)

나. 채용 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안의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11. 구분모집 시험의 초과합격

가. 대상 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

나. 실시 방법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12.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합격 인원** :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120% 선발
- ※ **선발 예정인원이 7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 8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인원을 범위로 함**
- **합격자 결정**
  - **(공개경쟁임용)**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경력경쟁임용)**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가산점을 포함하여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13. 응시자 유의사항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에서 5년 이내, 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 ○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전출제한 기간

- 3년 :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 5년 :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 기재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검정색사인펜, 수정테이프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신분증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 포함) 등

※ **수정테이프 이외에 수정액, 수정스티커를 사용한 경우 당해 문항은 무효처리 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모든 통신장비(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소지가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신장비 등을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사.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하므로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시험 장소는 응시자가 지원한 임용예정기관에 소재한 학교가 아닐 수 있으며, 원서접수 인원 및 시험장 여건 등에 따라 본인이 지원하지 않은 시군 소재 시험장에 배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또는 그 밖의 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경임만 해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성적 조회는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하.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행정-시험정보」에 공고되므로 시험 단계별 공고문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청 홈페이지([www.chungnam.go.kr](http://www.chu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 시험 관련 사항 : 충청남도청 인사과 고시팀(☎ 041-635-3535)

☞ 원서접수 관련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 취업지원대상자 확인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의사상자 확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 14. 2023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 ○ 기술계고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응시자격 변경

#### ▶ 변경 전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 1) 충청남도내 소재한 기술계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2) 타지역 소재 기술계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자

#### ▶ 변경 후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 1) 충청남도내 소재한 기술계고 졸업자 중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 또는 졸업예정자
- 2) 타지역 소재 기술계고 졸업자 중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 또는 졸업예정자 중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자

### ○ 연구사 환경연구(환경) 직렬 응시 자격 변경

#### ▶ 변경 전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 ▶ 변경 후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 ○ 거주지 제한 변경 : 9급 행정(일반행정)

#### ▶ 2022년 거주지 제한 시군 및 지방의회

-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보령시의회, 서산시의회, 논산시의회, 계룡시의회, 금산군의회, 부여군의회, 서천군의회, 청양군의회, 홍성군의회, 예산군의회, 태안군의회

#### ▶ 2023년 거주지 제한 시군 및 지방의회

-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공주시의회, 보령시의회, 아산시의회, 서산시의회, 논산시의회, 계룡시의회, 금산군의회, 부여군의회, 서천군의회, 청양군의회, 홍성군의회, 예산군의회, 태안군의회

## ○ 운전직렬 응시자격 변경

- ▶ 변경 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 후 대형승합·대형화물·대형특수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 변경 후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 15. 2024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 ○ 연구사 농업연구 직렬 자격요건 변경

- ▶ 변경 전 : 직류별 관련학과를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 ▶ 변경 후 : 직류별 관련학과를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 ○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추천학과) 변경

- ▶ 변경 전 : 직류별 해당학과 여부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 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 변경 후 : 직류별 해당학과 여부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 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단,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요건을 적용함**